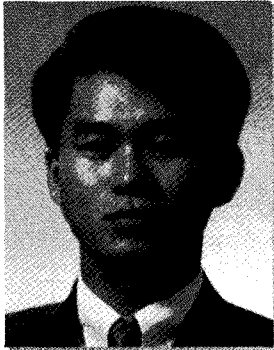


EU법의 역외적용



심 재 한
법학박사, 고려대 강사

시론

EC의 경쟁법 조항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는 자신의 지역적인 적용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위 국가간 조항(Zwischenstaatlichkeitsklausel) 즉 EC경쟁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경쟁저해행위가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EC조약 제81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EC경쟁법 규정과 회원국의 국내 경쟁법간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간 조항”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EC경쟁법은 제3국에서 야기된 경쟁저해행위에 대해서도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실무에서는 제3국에서 야기된 경쟁저해행위가 오로지 하나의 회원국에 대해서만 관련이 되고, 그 경쟁저해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경쟁이 저해된 한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들간의 거래에 어떠한 의미있는 간접적인 영향도 끼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EC경쟁법의 적용을 회피한다. 현재 경쟁저해행위가 제3국에서 야기된 경우에도 그것이 “공동체시장 내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EC경쟁법은 그 모든 경쟁저해행위에 적용된다는 영향이론(Auswirkungsprinzip)이 유럽위원회와 유럽법원의 유력한 판단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EC경쟁법의 국제적인 적용범위가 순수하게 영향이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지, 영향이론

**유럽위원회와 유럽법원은
기업결합에 참여한 기업의 소재지가
공동체 밖에 있든지, 그들 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계약이 공동체 밖에서
체결되든지, 그들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지든지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담합행위에 대하여도
영향이론을 근거로 하여 EC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공동체시장 내에서의 경쟁에 부가적인 제한이라는 전제조건, 특히 공동체시장 내에서의 실행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유럽위원회와 유럽법원이 제3국에서 야기된 경쟁저해행위에 대해 EC경쟁법을 적용하여왔는지에 관해 그들이 처리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유럽위원회의 적용사례

유럽위원회는 그의 실무를 통해 계속해서 영향이론을 지지하여 왔다. 공동체시장 내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공동체시장 내의 경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3국에서 야기된 경쟁저해행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시장 내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EC경쟁법의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유럽위원회의 적용사례에서는 기업결합의 규제가 특히 문제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럽위원회의 Boeing과 McDonnell Douglas간의 합병계획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커다란 반항을 불러 일으켰다. 유럽위원회는 기업결합규제규칙(FKVO)을 근거로 Boeing 사건에 대한 그의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기업결합규제규칙은 공동체시장 내

에서 구조적인 경쟁조건을 침해할 수 있는 공동체시장 전체에 의미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 기업결합규제규칙에 따르면 유럽법원에 의한 사후심판 가능성은 제외로 하고, 오로지 유럽위원회만이 공동체시장 내에서 의미를 가지는 모든 기업합병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규칙 제21조제1항)¹⁾

기업결합규제규칙의 적용범위이자 유럽위원회의 관할권은 동 규칙의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조의 구성요건은 오로지 기업결합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²⁾. 여타의 판단요소, 예를 들면 참여기업의 소재지 또는 기업결합계약이 맺어진 장소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유럽위원회는 Boeing 사건에 대하여 그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가. Boeing/McDonnell Douglas 사건

사건의 당사자인 Boeing과 McDonnell Douglas는 그들의 소재지를 미국에 두고 있었고, Boeing이 McDonnell Douglas를 인수하는 교섭도 그 "Deal"이 이루어지는 미국에서 행하여졌지만, 그 두 기업은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중요한 활동영역 중의 하나를 유럽시장에 두고 있었으므로 기업결합규

- 1) 회원국가들의 이해관계는 그러나 기업결합규제규칙의 여러 규정들에 의해 고려되었다. 독일의 요구에 의해서 제정된 제9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유럽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사건을 회원국의 관할관청으로 환부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공공의 안전, 언론의 다양성 그리고 감사규정 등과 같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즉 기업결합규제규칙 제1조제2항에 따르면 결합에 참가한 기업 전체의 전세계에 대한 매출액이 50억 Euro 이상이어야 하고, 결합에 참가한 기업 중 최소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체시장 내에서 각자 2억5천만 Euro 이상의 매출액을 올려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결합에 참가한 기업들이 각자 공동체시장에서의 총 매출액 중 3분의 2 이상의 매출액을 하나의 회원국에서만 올리는 경우에는 기업결합규제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제3국가와 오로지 하나의 회원국가의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난 기업결합은 당해 회원국이 기업결합규제규칙 제22조에 의한 유럽위원회의 관여를 신청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규칙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가지 판단요소를 충족하였다.

Boeing/McDonnell Douglas 사건에서 주의할 만한 것은 우선 사건대상의 경제적·정치적 의미이다. 왜냐하면 수출품목으로서 비행기만큼 정치적·국가적 권위 그리고 군사적·산업전략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의할만한 점은 분쟁 당사자의 역할분배이다. EU 국가들과 미국과의 상사분쟁은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이 그의 법을 자신의 국가영역을 넘어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에 의해 발단되었다³⁾.

해당 기업인 Boeing과 McDonnell Douglas가 유럽위원회에 그들의 합병계획을 신고하자 유럽위원회는 그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업에 전달하였다. 그에 따르면;

- 첫번째로 Boeing은 합병시에 이미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럽 내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시장지배적인 지위가 McDonnell Douglas를 인수하면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대형여객기에 대한 Boeing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McDonnell Douglas의 경쟁잠재력을 합산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 두번째로 Boeing은 미국의 여객운송회사들과 장기간의(20년) 독점적인 공급 및 정비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장에 대한 타인의 진출이 봉쇄되었다.
- 세번째로 Boeing이 군수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McDonnell Douglas를 인수하면서

McDonnell Douglas가 행하고 있던 방대한 미국의 군수 및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공적재원 조달 및 기술이전효과, 소위 Spillover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민간항공기 제작에 대해서까지 공공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유럽위원회의 심사절차가 진행되자 미국정부는 국방성과 법무성의 발표를 통해 계획된 기업결합의 금지는 미국 방위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입장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미국정부의 주장은 “공동체법의 책임영역 안에서 고려되었다”. 즉 미국방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유럽위원회는 그의 조사범위를 민간여객기 제작범위에 한정시켰고, 심사한 기업결합이 전투기의 국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공동체시장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하지 않는 기업결합은 유럽위원회가 기업결합규제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Boeing과 McDonnell Douglas의 합병이 공동체 시장에서 체결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전제조건은 Boeing이 일정한 조건과 부담을 지는 것이었다. 즉;

- 10년 동안 McDonnell Douglas는 분리된 법 인체를 유지하고 유럽 위원회에 매년 McDonnell Douglas의 회계결과를 제출한다.

3) 미국에서 행한 쿠바, 이란 그리고 이라크에 대하여 내려진 보이콧을 유럽기업들에 강제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된 Helms-Burton법과 D'Amato법은 아직도 유럽인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Meng, Extraterritoriale Jurisdiktion in der US-amerikanischen Sanktionsgesetzgebung, EuZW 1997, 423쪽.

- 이미 미국의 Delta 또는 American Airline 같은 항공운수회사와 체결한 독점적인 공급 및 정비계약을 해제하고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2007년까지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다.
- 10년간 유럽위원회에 군사 및 민간여객운송 분야에 대해 공적으로 요청된 연구 및 발전 계획을 매년 제출한다.

나. Gencor 사건

Gencor 사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의 두 회사간의 기업결합이 문제가 되었다. 즉 이 사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금(및 Rhodium) 제조사인 Gencor와 Lonrho(LPD)의 기업결합행위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이 두 기업 이외에도 Anglo American이 있었다. Anglo American은 세계에서 35% 내지 40%의 백금 판매량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가 25%, 그리고 Gencor와 LPD는 25%와 15%의 판매량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백금판매의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이다. 서유럽은 세계소비의 17% 내지 22%를 담당하고 북아메리카는 19% 내지 21%, 그리고 일본은 50%를 담당한다. Lonrho는 영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이 회사의 세계판매는 Lonrho에 종속되고 벨기에의 브뤼셀에 위치를 두고 있는 Western Metal Sales가 맡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담당관청은 이 두 회사들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어떠한 경쟁법적인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정부는 특별한 경우에는 두 개의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경쟁자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의 서한을 유럽위원회에 보냈다.

유럽위원회는 Gencor와 Lonrho의 기업결합행위로 인하여 백금과 Rhodium의 세계시장에 두 개의 과점 회사 즉 Anglo American과 Gencor/Lonrho만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체시장 내의 효과적인 경쟁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1996년 4월 24일 Gencor와 Lonrho의 기업결합행위가 기업결합규제규칙 제 8조제3항에 의해 공동체시장 내에서 체결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Gencor는 유럽위원회에 자신의 경제적 활동범위가 회원국 밖에 있으므로 자신이 행한 기업결합행위가 유럽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Gencor는 Zellstoff 사건(혹은 Woodpulp 사건)을 예로 들며, 이 Zellstoff 사건에서는 가격담합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담합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거나 수행되었지만, 자신이 행한 기업결합은 오로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시장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위원회는 자신의 결정이 Zellstoff 판결과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Lonrho가 벨기에에 있는 그의 자회사인 Western Metal Sales를 통하여 판매활동을 해왔으므로 그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하였다.

유럽법원의 입장

유럽법원은 EC조약의 경쟁법규정을 회원국가의 기업과 제3국가의 기업들 사이에 체결된 경쟁제한적인 담합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했다.

유럽법원은 그러나 영향이론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을 회피하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법원은 “공동체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는 표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소위

Zellstoff 사건 이후 이 원칙을 계속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실행”이라는 요건으로 보충하고 있다.

유럽법원은 Zellstoff 사건 이전의 ICI 사건에서는 기업단일체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에 있는 모기업의 유럽 자회사의 경쟁법에 반하는 행위가 콘체른에 관계된 기업단일체로 간주되었다.

가. Zellstoff 사건

경쟁법규정의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유럽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Zellstoff 사건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 그 당시 제3국가에 속해있었던 - 스칸디나비아국가의 종이재료생산자들간의 EC조약 제81조(그 당시 제85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담합행위가 문제된다. 생산자들은 부분적으로 지점, 중개상 그리고 자회사를 통하여 공동체시장에 진출하고 부분적으로는 직접 공급하였다. 유럽법원은 영향이론의 무제한적 적용을 회피하고 해당 기업들의 공급과 관련된 담합행위의 “공동체시장 내에서의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즉 유럽법원은 EC조약 제81조에 반하는 두가지 행동요소로 카르텔의 조직과 그것의 실행을 제시하였다. 경쟁법규정의 적용을 카르텔이 조직된 장소에만 의존했다면 기업들에 대하여 그 카르텔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법원은 결정적인 것은 그 “카르텔이 실행된 장소”라고 판시하였다. 이후에 일어난 공동체시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제3국가기업이 행한 공급차단사건에 대하여 유럽법원은 공동체에서의 공급차단 이행에 중점을 주었다. 공동체시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제3국가기업에 의한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다수의 판결도 같은 선

상에 놓여있다.

Zellstoff 사건에서 유럽법원이 카르텔이 실행된 장소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미국 카르텔법에 의해 발전된 작용원칙(Wirkungsprinzip)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즉 미국에서는 이미 1945년 Supreme Court에서 카르텔사건인 US v. Aluminium Co. of America(소위 “Alcoa” 판결) 판결로부터 두개의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 카르텔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한가지 전제조건은 카르텔의 실행이 미국시장에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전제조건은 그러한 작용이 의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나온 판결과 개정된 법률은 카르텔법에 반하는 행동이 미국시장에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세번째 요소를 첨가하였다.

유럽법원의 판결례에 의한 실행원칙이건 미국의 판결례에 의한 작용원칙이건 두가지 해결방안은 한 국가의 카르텔관청이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 Gencor 사건

유럽제1심법원은 Gencor 사건에서 관할권 문제를 기업결합규제규칙 제1조에 따라 판시하였다. 동 규칙 제1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이 공동체시장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당해 기업들이 공동체시장에 소재지를 가지는지 혹은 결합기업의 생산활동이 공동체시장에서 행해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출액이라는 표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관계되는 기업들은 기업결합규제규칙 제1조제2항의 전제조건을 충족

시켰다.

유럽제1심법원은 또한 제3국에서의 생산활동에 관련되지만, 지배적 지위의 성립 또는 강화로 이끄는, 그리하여 공동체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기업결합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규제규칙의 적용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Zellstoff 사건을 예로 든 Gencor의 주장도 배척되었는데, 즉 제1심법원에 따르면 Zellstoff 사건에서 공동체시장 내에서의 단순한 판매에 의한 담합행위의 수행이라는 표지는 공급원 또는 생산시설의 위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Gencor와 Lonrho가 기업결합행위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동체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제1심법원은 제3국에 소재지를 둔, 그리고 그 제3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Gencor와 Lonrho의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기업결합규제규칙 적용을 적정하다고 판시하였다.

● 맺는말

유럽위원회와 유럽법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결합에 참여한 기업의 소재지가 공동체 밖에 있든지, 그들 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계약이 공동체 밖에서 체결되든지, 그들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공동체 밖에서 이루어지든지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담합행위에 대하여도 영향이론을 근거로 하여 EC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공동체시장 내에서의 합의이행에 중점을 두는 판단근거는 예를 들어 시장분할담합에서 협정에 의해 공동체시장을 멀리하는 당해 기업들에 대

해 EC경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은 경쟁법규정의 목적상 지지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위원회와 유럽법원의 이러한 활동은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세계시장의 시대에 국적이나 기업소재지의 요소가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간다는 또 하나의 상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Boeing/McDonnell Douglas 사건에 있어서 Boeing이 부가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식으로 그 의무 위반이 처벌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에서 경쟁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Van Miert는 “만약 Boeing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제재수단을 즉각 실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실제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기업결합규제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워진 부담을 고의 또는 과실로 어기는 기업에 대하여 엄청난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위반의 양태와 정도에 따라 참가한 기업들이 획득한 총 매출액의 10%까지 부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상이 500억 달러인 Boeing에게는 50억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유럽위원회는 기업결합규제규칙 제15조에 따라 매일 최고 2만 5천 Euro까지의 강제부과금을 지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EC조약 제25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집행명령이다. 강제집행은 그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 내에서의 회원국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제3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은 국제소송절차법의 일반적인 규정 내지는 양국간 또는 다자간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EC경쟁법이 회원국 이외 제3국에서의 통상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는 국제법의 일

반규정, 국제적인 예절 그리고 저촉법의 고려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3국의 이해를 고려한, 그리고 국제예절과 저촉법의 숙고에 근거한 국제법상의 기본질서는 영향이론의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영향이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EC조약 제81조제1항과 제82조의 적용을 위해서 경쟁저해행위가 공동체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강도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대하는 국제적인 거대기업간의 경쟁사안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는 넓은 영역에서의 국제적인 공동작업이 필요

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유럽공동체와 미국 사이에는 그들 상호간 경쟁법 규정 적용에 대한 협정이 맺어졌다⁴⁾. 또한 1999년 4월 29일 유럽과 캐나다 사이에서 협정이 발효되었다. 현재 유럽공동체와 미국 사이에는 World Com/MCI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간에 긴밀한 의견교환 및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넓은 영역, 예를 들어 다국간의 조직인 WTO에서의 국제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될 차례이다. 이로써 공통된 국제적인 경쟁법 규정이 멀지 않은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공정**

4) Beschluß 95/145/EG, EGKS des Rates und der Kommission v. 10. 4. 1995 über den Abschluß des Abkommens zwischen den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Anwendung ihrer Wettbewerbsregeln, ABl. 1995 Nr. L 95/45. 이러한 유럽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미 1991년 9월 23일 유럽위원회와 미국 정부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비준되었고, 1991년 9월 23일로 소급하여 발효되었다.